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# 시 보

www.namwon.go.kr

<b>선 람</b>	기관장

제 34 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5. 3.27(금)

## 고 시

○남원예촌 연계도로 정비공사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.....1

## 공 고

○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자동차 구매예고통지서공고.....2

○2014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.....4

<b>회 람</b>		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※ 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9

남원시 고시 제2015 - 15호

## 남원에촌 연계도로 정비공사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
남원에촌 연계도로 정비공사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(☎063-620-6452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남 원 시 장

2015년 3월 27일

###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 : 도시계획시설변경(중로 2-1호선)사업

나. 명 칭 : 남원에촌 연계도로 정비공사

### 2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전라북도 남원시 금동 212-1번지의 58필지

### 3.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

가. 면 적 : 3,921m<sup>2</sup>

나. 규 모 : 광한북로 L=97m, B=15m / 고샘길방향 L=160m, B=15m

### 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남원시장(문화관광과장)

나. 주 소 :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

### 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: 인가일부터 12개월

###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: “실음생략”

### 7. 관계도서 : 실음생략

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 2015-444호

# 공 시 송 달

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 『공매예고통지서』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5년 03월 27일

# 남 원 시 장

- 1. 서 류 의 명 칭 :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자동차 공매예고통지서
- 2. 공 고 기 간 : 2015.03.27 ~ 2014.04.10
- 3. 공시송달 대상자 : 붙임 내역과 같음
- 4. 서 류 의 내 용
  -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기 위한 공매예고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
  -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

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,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● 문의처 :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(063-620-6288) ●

붙임

###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

성명	주소	사유	자동차	비고
이*노	남원시 금암길	폐문부재	전북3*나1915	

남원시 공고 제2015 - 447호

## 2014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3조의3(재난관리 실태공시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(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)에 따라,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(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사업 등)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,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4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.

2015. 3. 27.

남 원 시 장

### 1.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

- 2014년 7월과 8월 호우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여 총15건(4,178천원)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, 주요 하천변 재난취약지역 인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예경보시스템(자동음성통보시스템)을 추가 설치하였음.
-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상·하반기 각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, 재난방지시설 정비를 위하여 조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외 12개 사업(12,252백만원)을 추진하여 재해로부터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음.

## 2.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

### ①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

일시	재난(피해) 원인	피해내용	복구내용	추진사항
2014.7.19. ~ 7.19	호우	사유시설(농경지, 13건) - 유실 0.01ha - 매몰 0.23ha	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- 13건/1,504천원	종료
2014.8.17. ~ 8.18	호우	사유시설(농경지, 2건) - 유실 0.003ha - 매몰 0.033ha	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- 2건/2,674천원	종료

### 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

#### (1)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

##### 가. 기구



#### 나. 정원

과 별	계	일 반 직								기타
		소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	
계	정원	205	204	1	10	47	59	49	38	1
	현원	200	198	1	10	56	67	32	32	2
경제과	정원	23	23	1	1	6	7	6	2	-
	현원	23	23	1	1	6	8	2	5	-
안전재난과	정원	13	13	-	1	3	4	2	3	-
	현원	11	11	-	1	4	3	-	3	-
농정과	정원	24	24	-	1	5	9	5	4	-
	현원	24	24	-	1	8	9	2	4	-
원예허브과	정원	23	22	-	1	6	6	5	4	1
	현원	24	22	-	1	7	6	5	3	2
축산과	정원	16	16	-	1	4	6	4	1	-
	현원	16	16	-	1	5	6	2	2	-
산림과	정원	23	23	-	1	5	3	7	7	-
	현원	22	22	-	1	6	6	5	4	-
도시과	정원	20	20	-	1	5	7	6	1	-
	현원	18	18	-	1	4	6	4	3	-
건설과	정원	20	20	-	1	3	6	4	6	-
	현원	19	19	-	1	4	9	2	3	-
교통과	정원	18	18	-	1	4	6	2	5	-
	현원	18	18	-	1	5	5	5	2	-
건축과	정원	25	25	-	1	6	5	8	5	-
	현원	25	25	-	1	7	9	5	3	-

◇ 연도별 비교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
계	178	188	198	199	200
일반직 현원(인원)	175	182	193	195	198
기 타 현원(인원)	3	6	5	4	2



☞ 일반직 및 기타 현인원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

- 지속적인 중요업무 추진 및 기구개편에 따른 신설, 담당사무 재조정 등

(2)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

구 분	개소	설치장소
자동음성통보시스템	80	운봉 수철마을외 79
자동우량경보시설	14	시청감시국외 13
자동우량관측장비	17	시청외 16
자동기상관측시스템(AWS)	2	운봉읍, 보절면
자동수위경보시스템(수위관측시설)	3	반야, 삼화, 축천
재난영상감시시스템(CCTV)	14	산내 내령외 13
재해문자전광판	2	산내면 삼화교, 내령솔밭

◇ 연도별 비교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
계	65	110	110	110	132
자동음성통보시스템	24	58	58	58	80
자동우량경보시설	14	14	14	14	14
자동우량관측장비	17	17	17	17	17
자동기상관측시스템(AWS)	0	2	2	2	2
자동수위경보시스템(수위관측시설)	0	3	3	3	3
재난영상감시시스템(CCTV)	8	14	14	14	14
재해문자전광판	2	2	2	2	2



☞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

- 재난 예경보시스템(음성통보시스템) 구축, 인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

- 주요 하천변 재난 취약지부터 연차적 실시

(3)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·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 
가.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(재난안전관련 분야) 교육 실시

과정명	교육기간	교육기관	참석 인원	비고
제5기 재난안전관리자과정	14.10.6-7	중앙민방위방재 교육원	1	
재난관리의 이해 및 재난대응체계 교육	14.9.3	전라북도	8	
특정대상시설 및 재난징후정보 교육	14.2.28	전남지방공무원 교육원	1	
특정관리대상시설점검실무과정	14.8.25-29	중앙민방위방재 교육원	1	
지역축제안전관리과정	14.03.17	중앙민방위방재 교육원	1	
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및 지역안전도 실무교육	14.5.28	소방방재청	2	
재난관리 긴급통신 지원 실무과정	14.12.1-5	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	1	
재난관리총론과정	14.9.2~29	지방행정연수원	1	
재난관리총론과정	14.9.1~28	중앙민방위방재 교육원	1	
재난관리일반	14.9.2~29	지방행정연수원	4	
NDMS-자연재난과정(풍수해,대설)	14.10.15-17	중앙민방위방재 교육원	2	
여름철 사전대비 추진 담당자 교육	14.3.17	전라북도	1	
여름철 풍수해대응체계 구축 순회교육	14.5.1	소방방재청	1	
지진방재 담당공무원 실무교육	14.5.26	소방방재청	1	
인적재난관리과정	14.7.1-27	중앙민방위방재 교육원	1	
겨울철 자연재난사전대비 교육	14.10.16	전라북도	1	

## 나.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·훈련

일시	장소	참석인원	내 용	주관	비고
11.21	3개 읍면	133	폭설피해 농업시설 복구 훈련	남원시	

## 다. 재난관리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·훈련

교육/훈련명	일시	장소	참석인원	내 용	주관	비고
현장재난 관리교육	6.24~6.25	12지구	25	지구별 재난발생 요인 및 전후조치사항 시달	남원시	

### ☞ 교육·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

-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국지성 폭우와 강력한 태풍 등의 재난에 대처하는데 시의 행정력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민들의 재난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 및 훈련 인원이 증가함.

## 라.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관리 교육·훈련/ 봉사단원 및 제보실적

### ◆ 교육·훈련 실적

일시	장소	참석인원	내 용	주관	비 고
2014.10.07.	전북도청	10	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대응역량강화 교육	안전모니터봉사단 전라북도연합회	

## (4)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

### 가. 안전관리체계의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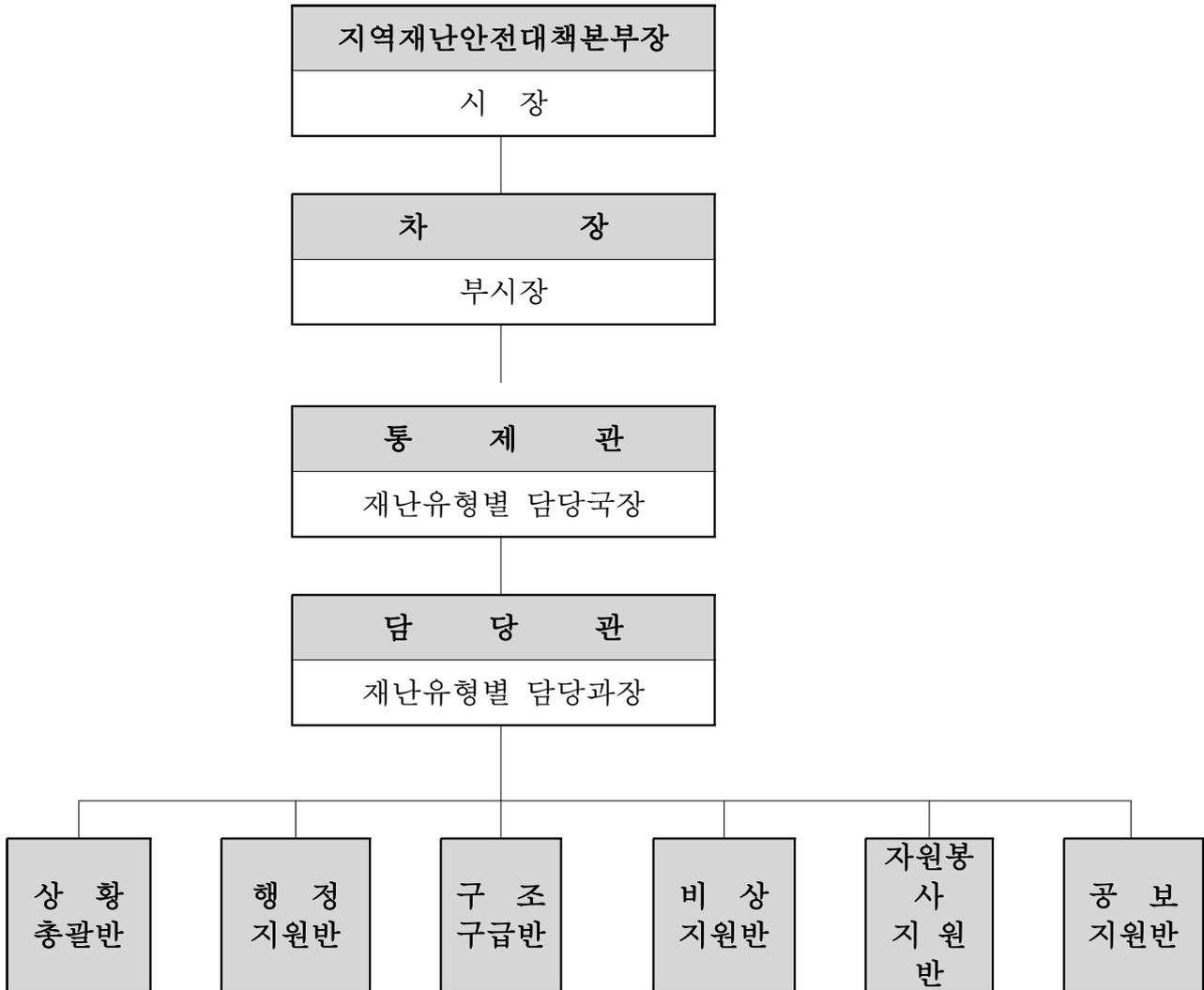
#### (가)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

#### [안전관리기구의 기능]

구 분	근 거	구 성	기 능
남원시안전관리 위원회	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1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원장 : 시장</li> <li>• 위 원 : 19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안전관리정책의 심의, 총괄·조정</li> <li>•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</li> <li>•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</li> <li>• 재난관리업무 협의·조정</li> <li>• 당해 위원회에 권한사항</li> <li>•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</li> </ul>
남원시안전관리 실무위원회	같은 법 제11조제3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원장 : 부시장</li> <li>• 위 원 : 19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</li> <li>•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</li> </ul>
남원시재난안전 대책본부	같은 법 제16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본부장 : 시장</li> <li>※위기단계에 따라 인원조정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응급대책,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ul>

## [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]

### □ 조직



### □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

- 상황관리 총괄 :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(안전재난과)
  - \*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
- 긴급생활 안정지원 :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(주민복지과)
  - \* 인명피해(사망·부상·실종),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
- 재난현장 환경정비 : 유해화학물질, 쓰레기 등 수거·처리 지원(환경과)
  - \* 환경분야 공공·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(임시) 환경정비 지원

- 긴급 통신지원 :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(홍보전산과)  
\* 통신분야 공공·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(임시) 통신 지원
- 시설 응급복구 : 공공·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(해당실과)  
\* 공공·사유시설(환경·통신·에너지·교통시설 제외)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
- 에너지 기능복구: 가스·전기·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(경제과)  
\* 에너지분야 공공·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(임시) 에너지 지원
- 재난수습 홍보 : 재난대처·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·조정(홍보전산과)  
\*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
-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: 국가 재난물자계획, 관리,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(안전재난과)  
\* 타 기능에 대한 물자·자원(장비·자재·시설) 지원 총괄관리
- 교통대책 : 육상(육로, 항공), 해상 교통수단 지원(교통과)  
\* 교통분야 공공·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(임시) 수송 지원
- 의료·방역 :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(보건소)  
\* 의료·방역분야 공공·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(임시) 의료 지원
- 자원봉사 관리 :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(총무과)  
\* 타 기능에 대한 인력(민·관·군) 지원 총괄관리
- 사회질서 유지 :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(남원경찰서)  
\* 교통, 범죄, 현장통제, 안전관리, 주민보호(대피 등) 등 경찰총괄관리
- 수색·구조·구급 : 재난지역 구조·구급 지원(남원소방서)  
\* 인명구조, 응급처치, 응급운송 및 사망·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

## 나. 안전관리규정의 제정

건명(규정명칭)	주요내용	제정일자	비고
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	◦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	2005.02.14.	
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◦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	2005.02.14.	
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	◦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	2012.11.16.	
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	◦ 남원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	2005.02.14.	
재난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	◦ 재난정보의 수집·전파,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	1999.01.28.	
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	◦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	2005.09.29.	
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	◦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·지휘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	2014.01.02.	
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조례	◦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	2006.02.10.	
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	◦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(이하 “검토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	2006.02.10.	
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	◦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	2013.05.10.	
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	◦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·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	2013.11.11.	

## (5)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·관리 및 정비

### 가.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·관리

[유형별]

총계	시설물						건축물							비고
	소계	교량	매개이동계구역	수상레저	야외연지	토목공사장	소계	아파트	고민청사	종교시설	판매시설	위락휴게시설	기타	
243	46	24	18	2	1	1	197	96	26	12	12	9	42	

[등급별]

구분	계	중점관리시설				재난위험시설			비고
		소계	A등급	B등급	C등급	소계	D등급	E등급	
계	243	243	203	27	13	-	-	-	
시설물	46	46	24	12	10	-	-	-	
건축물	197	197	179	15	3	-	-	-	

### 나.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정비

[안전점검 실시]

구분	기간	대상수량	점검건수	지적건수	점검자	지적사항 조치결과
상반기	1.01.~6.30.	232	232	-	곽효철	-
하반기	9.22.~11.30.	243	243	-	박영환	-

(6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·관리

◆ 재난방지시설의 정비

사업명	위치	사업내용 (규모)	사업기간	사업비 (백만원)	정비목적
계				12,252	
조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	조산동 일원	배수로 1.8km	2013. ~ 2014	2,555 (총 4,700)	침수예방
남원향교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	동충, 왕정, 향교 일원	저류지 1식 배수로 2.0km	2013. ~ 2014.	5,800 (총 10,500)	침수예방
남계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	이백면 남계리 일원	배수로 4.7km	2014. ~ 2015.	2,500	침수예방
보절신파지구재해예방사업	보절면 신파리 일원	배수로 및 암거설치	2014.05. ~ 2014.12.	653	재해예방
금지내기 지하차도배수펌프 정비공사	금지면 택내리 일원	수중펌프 정비	2014.01. ~ 2014.03.	6	침수예방
주천무수지구재해예방사업	주천면 장안리 일원	배수로 및 가드레일 설치	2014.11. ~ 2014.12.	49	재해예방
대강입암지구재해예방사업	대강면 입암리 일원	사면정비 L=90m	2014.11. ~ 2014.12.	71	재해예방
대강수흥지구재해예방사업	대강면 수흥리 일원	사면정비 L=36m	2014.11. ~ 2014.12.	17	재해예방
덕과만도지구재해예방사업	덕과면 만도리 일원	사면정비 L=27m	2014.11. ~ 2014.12.	21	재해예방
덕과비촌지구재해예방사업	덕과면 신양리 일원	사면정비 L=15m	2014.11. ~ 2014.12.	10	재해예방
대강생암지구재해예방사업	대강면 생암리 일원	저류조 1식	2014.07. ~ 2014.12.	300	침수예방
양가저수지 정비공사	이백면 양가리 일원	저수지 정비 1식	2014.04. ~ 2014.11.	200	침수예방
노후하수관로 정밀진단	남원시 일원	L = 14km	2014. 03. ~ 2014.11.	70	노후하수관로조사

◇ 연도별 비교(도표, 그래프 등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
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	7,180	11,170	11,190	7,331	12,252



☞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

- 침수 및 재해예방을 통한 지역주민의 인적·물적 재산보호를 위한 사업비 증액

(7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  
축 및 장비·인력의 지정

가. 재난관리자원의 비축

[방재물자]

구분	계	오일헨스	유흡착제	흡착물	유처리제	기타
		m	매	m	kl	
총계	4종	240	4,500	48	6.14	-

## [의료시설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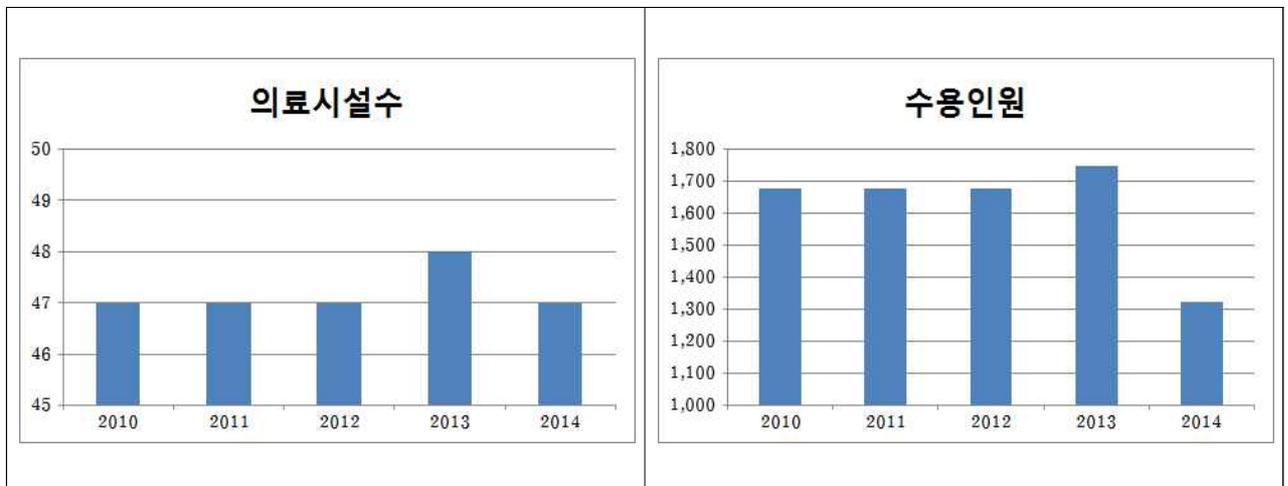
구 분	개소	의사	간호사	구급차	병상수	영안실
합 계	47	95	244	8	1,322	16
병 원	4	55	167	4	779	12
보건소	40	32	39	1		
기 타	3	8	38	3	543	4

## [수용시설]

구분	합 계		학 교		마을회관		경로당		관공서		기 타	
	개소	수용인원	개소	수용인원	개소	수용인원	개소	수용인원	개소	수용인원	개소	수용인원
총계	22	3,265	21	3,238	1	27	-	-	-	-	-	-

### ◆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

구 분		2010	2011	2012	2013	2014
의료시설수		47	47	47	48	47
수용시설	개소	8	8	8	9	7
	수용인원	1,675	1,675	1,675	1,745	1,322



☞ 의료 및 수용시설 지정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

- 2013년도 요양병원 1개소 증가
- 2014년도 보건진료소 1개소 증가
- 2014년 종합병원, 부대시설(노인요양병원) 허가취소

## 나. 장비 및 인력의 지정

[장비지정]

### ◆ 구조장비

구분	계	사다리차	구조 공작차	배연차	헬기	보트	구명환	구명조끼
총계	158	2	-	-	-	2	77	77

### ◆ 복구장비

구분	계	크레인	굴삭기	불도 우저	덤프	청소차	청소차
총계	158	-	56	5	55	21	21

### ◆ 산불진화장비

구분	계	헬기 보유	헬기 임차	산불 진화차	동력 펌프	등짐 펌프	진화 도구	무전기
총계	1,486	-	-	6	7	177	1,115	181

### ◆ 기타장비

구분	계	용접기	컴퓨터 레사	양수기	발전기	천공기	착암기	절단기
총계	312	42	9	235	5	4	2	15

◆ 연도별 비교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
구조장비	-	-	-	154	158
복구장비	-	-	-	170	158
산불진화장비	-	-	-	1,486	1,486
기타장비	-	-	-	312	312

[인력지정]

◆ 기술인력

구분	계	토목	건축	환경	전기	가스	통신	화공	기타
인원	249	58	72	2	116	-	1	-	-

◆ 기능인력

구분	계	전기공	기계공	통신공	용접공	철근공	중기운전	중기정비	기타
인원	35	14	-	-	-	-	20	1	-

◆ 자원봉사단체, 특수단체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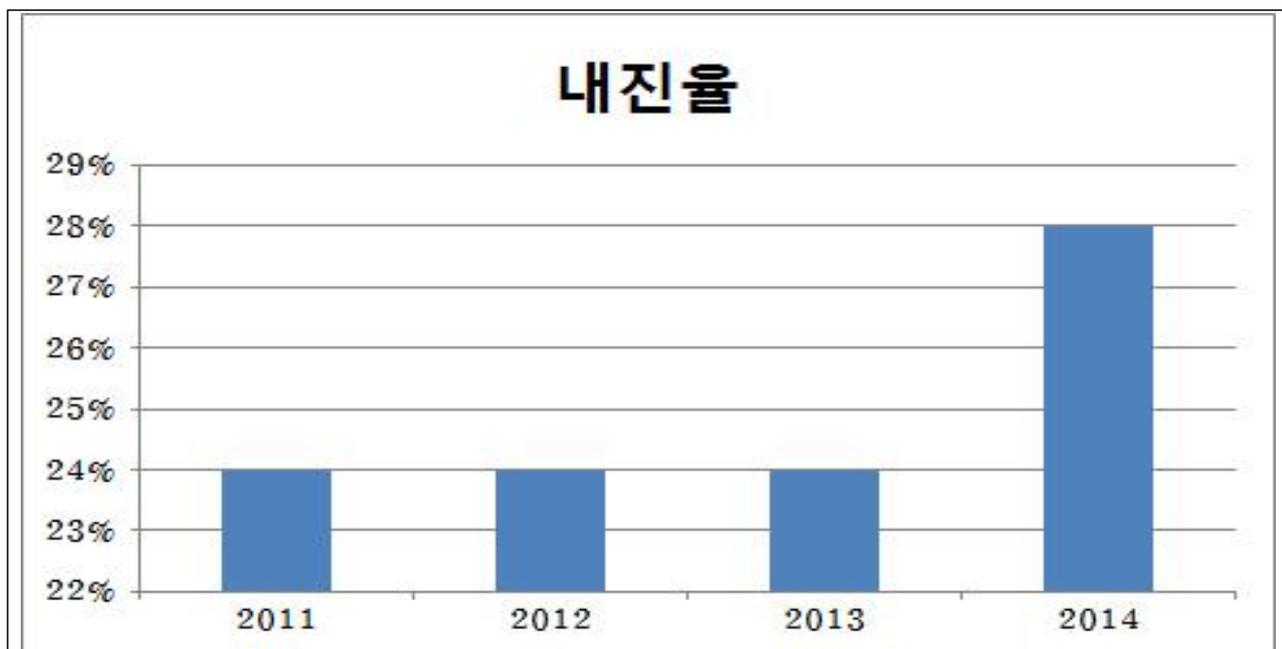
구분	계	특수단체 및 개인					봉사단체 및 개인					
		의용소방대	산악구조대	수중구조대	아마추어무선봉사대	기타	적십자봉사대	새마을부녀회	해병전우회	모범전자회	여성단체협의회	기타
단체	35	22	2	1	2	2	1	1	1	1	1	1
인원	7,073	730	29	27	48	40	400	2,640	290	64	2,332	473

(8)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
가.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

시설물별	내진설계 대상(①) (동수, 시설물 수)	내진설계 적용 +내진성능확보+ 내진 보강 실적(②) (전년도 까지)	2014년 내진보강 실적		내진율(%) (②+③)/① × 100
			동수(시설수) (③)	투자사업비 (백만원)	
계	189	53	-	-	28%
공공건축물	28	24	-	-	86%
도로시설물	142	7	-	-	5%
수도시설	8	8	-	-	100%
폐기물매립시설	1	1	-	-	100%
공공하수처리시설	3	2	-	-	67%
병원시설	7	4	-	-	57%

◇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(도표, 그래프 등)

구 분	2011	2012	2013	2014
내진율	24%	24%	24%	28%



### 나.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·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

구 분	구조체 내진 보강 여부	지대본·상황실		비고
		바닥 이중마루 보강 여부	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	
지역대책본부	여	여	여	
종합상황실	여	여	여	

### ③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

[재난관리기금 적립]

법정적립기준	당해연도 확보기준액(①)	확보액(②)	확보율 (①/②×100)
3,152백만원	243백만원	243백만원	100

#### ◇ 연도별 비교(도표, 그래프)

구 분		2010	2011	2012	2013	2014
확보액		254,113,000	339,670,000	280,491,000	283,683,000	431,243,000
사 용 액	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	22,790,140	272,590,000	432,455,180	205,292,570	328,164,350
	재난피해시설 및 긴급한 응급복구 조치	147,033,490	-	46,385,000	29,381,000	48,096,000



④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·운용 현황

[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·운용 등 총괄 현황]

행동매뉴얼 명	소관 국 또는 과	작성년도	매뉴얼 주요내용
풍수해	안전재난과	2014	위기대응 수준별 조치사항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
지진	안전재난과	2014	"
대형화산폭발	안전재난과	2014	"
산불	산림과	2014	"
유해화학물질사고	환경과	2014	"
대규모수질오염	환경과	2014	"
댐붕괴	안전재난과	2014	"
고속철도대형사고	교통과	2014	"
다중밀집시설건축물붕괴	건축과	2014	"
가축질병	축산과	2014	"
감염병	보건소	2014	"
정보통신	홍보전산과	2014	"
전력	경제과	2014	"
보건의료	보건소	2014	"
육상화물운송	교통과	2014	"
정부중요시설(지자체청사)	총무과	2014	"
도로터널사고	건설과	2014	"
항공기사고	교통과	2014	"
가스수급	경제과	2014	"
문화재사고	문화관광과	2014	"

⑤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

[진단분야별 점수]

구 분	위험환경	위험관리능력	방재성능	등 급(그룹)
진단결과	0.582	0.82	0.76	라

\* (안전) 1등급/그룹 '가' <-----> 10등급/그룹 '마' (위험)

### ◆ 년도별 등급 비교

구 분	2011	2012	2013	2014
등 급	라	라	라	라

⑥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# ☞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

- 지 구 명 : 덕과 사울2지구
- 지정·고시일 : 2014. 9. 19.
- 위     치 : 남원시 덕과면 사울리 101-12번지 일원
- 지정면적 : 5,168㎡
- 지정등급 : D등급
- 관 리 자 : 남원시장(건설과)
- 지정사유 :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

**♣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남원시 안전재난과 [담당자 : 박영환, 전화 : 063)620-6954]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